

부설연구소(실) 평가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설연구소(실) 설치지침에 의해 설치된 부설연구소(실)의 특성화, 전문화를 목표로 대내외적인 연구경쟁력 확보와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부설연구소(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소(실)는 부설연구소 설치지침에 의해 설치된 연구소를 말한다.
② 부설연구소(실)중 평가연도를 기준하여 평가연도에 설치된 신설연구소(실)는 평가대상 연구소(실)에서 제외한다.

제3조 (평가지기) 각 부설연구소(실)의 학술 및 연구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시행하며, 평가 직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1학기 중에 평가한다.

제4조 (평가방법) ① 부설연구소(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방법은 교무처에서 각 연구소(실)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한다.

② 교무처장은 연구활동실적에 관한 평가사항을 부설연구소(실)장에게 통보하고, 부설연구소(실)장은 연구활동실적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설연구소(실)장은 교무처가 제공한 평가자료 외의 다른 실적이 있는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는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한다.

제6조 (평가기준) ① 부설연구소(실) 평가기준은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인정기준에 의하며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은 별표1, 2와 같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6. 28.>

제7조 (평가결과의 처리) ① 평가위원은 각 부설연구소(실)를 평가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설연구소(실) 평가결과는 부설연구소(실)의 항목별 최종 평가점수를 종합한 총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5. 14.>

가. A등급 : 총점 90점 이상인 연구소(실)

나. B등급 : 총점 80점 이상인 연구소(실)

다. C등급 : 총점 70점 이상인 연구소(실)

라. D등급 : 총점 50점 이상인 연구소(실)

마. F등급 : 총점 50점 미만인 연구소(실)

③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A,B,C 등급별로 차등 지급을 하며 그 금액은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8. 9. 11., 2012. 5. 14., 2014. 8. 15>

④ 부설연구소(실)가 1회 F등급을 받거나 연속2회 D등급 이하를 받으면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연속2회 F등급을 받으면 연구소(실)를 폐쇄한다. <신설 2008. 9. 11. 개정 2012. 5. 14.>

⑤ 교무처장은 각 연구소장에게 평가가 끝난 뒤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각 연구소(실)장중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연구소(실)에서 특별사업에 대한 연구비를 신청할 경우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특별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8.>

제8조 (기타) 부설연구소(실)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① (지침의 개폐) 지침의 개정 및 폐지는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7. 5. 8.>
- ② 이 지침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지침은 200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지침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4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설연구소(실) 평가기준표 - 인문계

평가영역	조사항목	채점기준	배 점	비 고
I. 연구소 운영 (20점)	1. 연간운영계획을 포함한 장단기 발전계획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2점	
	2.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운영위원회	2점	
	3. 연구소 운영비 사용의 적절성	통장관리, 장부관리 및 관련영수증 관리	5점	3만원이상 간이영수증 사용금지
	4. 연구기금 조성	연도말 기금조성액 5백만원 이상	7점	신설연구소2년유예, 7점부여
	5. 후원금	후원금 모금 실적	4점	대학(교비회계)을 통한 수입
II. 연구 및 학술 활동 (70점)	1. 연구 실적 (논문집, 출판 등)	연구소 발행 연구실적	20점	연구보고서 포함
	2. 연구 project 수주	학교(연구소) 명의로 계약된 연구	10점	
	3.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실적	국제규모 10점 전국규모 7점 세미나 5점 기타 모임 2점 (학술 특강/TOEIC강좌, 자격증취득과정 등의 교육/학술강좌/워크샵/20명 이상의 간담회와 연구모임/학술포럼)	20점	참석인원 100명 이상인 세미나와 기타모임⇒ 전국규모 학술대회기준 점수부여
	4. 연구소(실)지 발간실적	연구소 소식지 (1종당 5점)	5점	
	5. 기타 연구 및 학술활동	교재/자료집 발간 5점 기타 학술 활동 3점	15점	
III. 기타 활동 (10점)	홈페이지 운영등의 기타활동	특별 기획 프로그램 4점 홈페이지 운영 2점 기타 연구소 대외 활동 2점	10점	
합계(100점)			100점	

[별표 2]

부설연구소(실) 평가기준표 - 예능계

평가영역	조사항목	채점기준	배 점	비 고
I. 연구소 운영 (20점)	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간운영계획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2점	
	2.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2회 이상	2점	
	3. 연구소(실) 운영비 사용의 적절성	통장관리 장부관리 및 관련영수증 관리	5점	3만원이상 간이 영수증 사용금지
	4. 연구기금 조성	연도말 기금조성액 5백만원 이상	7점	신설연구소2년유 예, 7점부여
	5. 후원금	후원금 모금 실적	4점	대학(교비회계)을 통한 수입
II. 연구 및 학술 활동 (70점)	1. 연구비 수주실적	학교(연구소) 명의로 계약된 연구	10점	연주회 지원비도 연구비 수주실적 에 포함.
	2. 연주회 및 학술활동	세계적인 교회음악인 초청 아카데 미 개최 20점 Choral Reading Session 15점 Master Class 5점 성가곡 시범 연주회 10점 교회음악 기획 연주회 10점 초청 연주회 5점 예배음악에 관한 서적 출판 10점 성가곡집 출판 10점 송영곡집 출판 5점 절기별 오르간선곡집 출판 5점 Organ Free Accompaniment집 출판 5점 전국규모 학술대회(세미나) 7점	60점	배점 상향 및 전 국규모 학술대회 (세미나) 신설
III. 기타 활동 (10점)	홈페이지 운영등의 기타활동	특별 기획 프로그램 4점 홈페이지 운영(개편작업 등) 2점 Hymn Festival 및 시범예배 2점	10점	
합계(100점)			100점	